

FSS/2311-04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9년 및 '20년 1분기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보유중인 B사(이하 '종속기업')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기간 노조 파업, 경기 악화, 시장의 가격경쟁 가속 등의 사유로 '17년 이후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종속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 지원을 확대하면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19년 및 '20년 1분기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 재무상황 악화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19년 및 '20년 1분기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 및 14에 따르면, 회사는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징후가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9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는 관련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17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1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회사가 매출 지원을 하면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회사 경영진의 주장을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자산 등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는 보고기간 말마다 수행되어야 하며,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이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